

# 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(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)

의안 번호	141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가. 「정신재활 시설 관리 및 운영」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간재활 훈련과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①항 정신재활시설의 설치 운영, 제⑤항 정신재활시설의 위탁 운영 및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①항 (시장의 책무) 동 조례 제15조 ①항 (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(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))에 의한 사무로서,

나.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항 3호 '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'로서, 제5조(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) 심의 완료 후,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(재위탁)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「정신재활시설 관리 및 운영」 (현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)

나. 위탁내용 : 정신재활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

○ 위탁사무 내용

- 종합시설(주간 및 직업재활) 운영

- (정신건강지원) 정신건강 평가, 개별서비스 계획, 증상관리 등 사례관리
- (사회생활지원) 심리정서회복 문화활동, 사회기술, 직무기능 향상 교육 등
- (이용자가족지원) 맞춤형 상담 및 교육, 지지 프로그램 운영

-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

- (취업준비지원) 직무능력평가, 직무단계별 취업교육, 체험훈련 프로그램
- (취업유지지원)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유지 모니터링, 중도포기자 재교육
- (취업지원 체계 구축) 직무개발, 직무훈련프로그램 개발, 취업처 발굴 및 네트워킹, 연계자원 개발, 취업활동과 연계한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등

- 사회적 환경조성 : 정신건강 인식개선, 온라인 정보제공 서비스 등

-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하여 “시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6조 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 ⑤항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)①항3호

라. 위탁유형 : 시설형(재위탁)

마. 민간위탁 필요성

- 「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」 운영은 정신질환자 재활을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,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전문 지식과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임
-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특수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, 민간의 축적된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지원하고자 함

바. 위탁기간 : 2024. 1. ~ 2026. 12. 31.(3년)

사. 소요예산 : 1,771,283천원

- 민간위탁금 : 1,375,283천원(인건비 820,109천원, 운영비 302,649천원, 사업비 등 252,525천원)

- 건물 임차료 : 396,000천원

※ 건물연면적 1,232 $m^2$ (373평) 33,000천원×12개월=396,000천원

아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- 정신재활시설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

자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#### 제26조(정신재활시설의 설치·운영)

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정신재활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정신재활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- ④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, 수용인원, 종사자 수·자격, 설치·운영 신고, 변경신고 및 정신재활시설의 이용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시장의 책무)

-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과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과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복지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, 정신질환을 예방·치료하며,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회복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연구·조사와 지도·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. (중략)

제15조(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)

-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  - 1.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
  - 4. 권익옹호
  - 5. 평생교육 (중략)

나. 예산조치 : 시의회 제321회 예정(예산담당관 협의 완료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최초위탁기간 : 2021.9.1.~ 2024.8.31.(3년)

- 수탁기관(사회적협동조합 '공감과 연대')의 수탁업무 중단결정 (2023.7.31.)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3.8. : 민간위탁추진 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(재위탁)

- 2023.9. 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3년 제7차)

○ 향후계획

- 2023.11. : 시의회 동의 및 예산 확보

- 2024.1. :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

(수탁기관 선정과 센터 명칭 변경 병행하여 추진 예정)

※ 작성자 :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이복남 (☎ 2133-7558)